

의안번호	2208416
의 퇴 인	이소영 의원
회 답 일	2025. 4. 15.
추계번호	25A1161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1조제1항제6호 신설(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대상에 “「상표법」 제108조의3 ¹⁾ 에 따른 정보 제공” 추가	의무규정
2	안 제48조제1항(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의 회의(분쟁 조정은 제외)는 위원장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9인으로 구성	의무규정
3	안 제48조제2항(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회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사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음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등 근거 규정
1	안 제41조제1항제6호 신설(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48조제1항(위원회의 구성 등)	
3	안 제48조제2항(위원회의 구성 등)	

- 1)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802호, 2024.11.22.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 제108조의3(정보 제공의 청구) ①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민사상의 소제기 및 형사상의 고소를 위하여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가지고 있는 해당 침해자의 성명과 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거절한 경우 권리주장자는 특허청장에게 해당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그 정보의 제공을 명령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침해자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④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2항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정보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허청장은 그 정보를 제2항에 따른 청구를 한 권리주장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침해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제1항의 청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그 밖에 권리주장자의 침해자 정보 제공 요청 및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①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대상에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802호) 제108조의3에 따른 정보 제공을 포함하고, ②분쟁 조정을 제외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회의의 경우 위원장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③회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의 구성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상표법 개정안”) 제108조의3은 자신의 상표권 등이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권리주장자”)가 민사상의 소제기 및 형사상의 고소를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²⁾에게 침해자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를 거절하는 경우 특허청장에게 청구하여 특허청장이 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상표권 등에 대한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이나, 시행될 경우 권리주장자의 요청만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하여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 제공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의하게 하려는 것임
 - 또한, 해당 정보 제공에 대한 사항을 위원회가 심의함을 전제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분쟁 조정을 제외한 회의의 경우 9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심의사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
- 개정안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사항이 추가되고, 회의 참여 위원이 축소됨과 함께 분야별 소위원회의 구성되는 경우 위원에게 지급되는 참석수당 및 안전검토수당 등이 증가하여 국가의 재정지출이 증가할 가능성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용어의 의미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상표법 개정안 검토보고(2025.2.19.)에서는 “온라인상의 상품거래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자”로 보고 있으며, 예시로 인터넷 중개 쇼핑몰(쿠팡, 11번가, 네이버쇼핑, 카카오쇼핑 등), 상품거래 중개가 이루어지는 SNS(네이버밴드, 인스타그램 등)를 들고 있음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802호, 2024.11.22.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에 접속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품 등을 양도 또는 인도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특허청에 따르면 현재 위원회의 분야별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음. 한편, 최근 5년간(2020~2025.4.) 위원회의 전체회의는 총 2회 서면으로 개최되었으며³⁾, 위원들에게 안전검토수당을 포함하여 별도의 회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음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①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08조의3에 따른 정보 제공이 포함됨과 아울러 심의 안전에 따라 9명으로 효율적인 회의를 개최·운영할 수 있게 됨으로써 위원회의 회의 횟수가 증가할 수 있으며, ②필요한 경우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위원에게 지급되는 회의 수당이 증가할 수 있음
 - － 현재 위원회가 총 79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⁴⁾된 점을 고려할 때(2025.4.14. 기준), 현행법에 따라 별도의 조정부⁵⁾가 구성되는 분쟁 조정 건을 제외하면 다른 심의 안전에 대해서는 소규모의 위원을 구성하여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 사항이 추가될 뿐만 아니라 안전에 따라 필요한 경우 소규모 인원만을 대상으로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분야별 소위원회 또한 구성할 수 있게 되므로 기존보다 회의 횟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개정안에 따른 국가의 재정지출 증가분은 위원회의 회의 횟수 증가분에 위원 수 및 수당 단가를 곱하여 추계할 수 있으나⁶⁾, 회의 횟수 증가분과 위원 수를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으므로 소요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⁷⁾

3)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현황(2020~2025.4.14.)

연도	안전	참석자수
2023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의결(서면회의)	69명
2021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의결(서면회의)	59명

자료: 특허청

- 4) 현행법 제41조제2항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100명 이하의 조정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5) 분쟁 조정을 받으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 3명 이내의 심의·조정 기구로, 현행법 제42조에 근거를 두고 있음

「발명진흥법」 제42조(조정부) 위원회는 분쟁 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調停部)를 두되, 조정부의 위원 중 1명은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 6) 위원에 대한 회의 수당 외에 위원회 운영비 등 여타 예산의 증가가 없다는 전제 하에 검토함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08조의3의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데 따른 위원회의 회의 횟수 증가분을 추계하려면 권리주장자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 횟수 및 빈도를 추정할 수 있어야 하나, 이는 아직 시행되지 않은 사항이므로 정보 제공 요청 수요가 얼마나 발생할지 알 수 없음
 - 또한, 위원회의 회의 횟수와 위원 수는 소위원회의 구성에 영향을 받을 것이나, 현 시점에서 소위원회 구성 여부와 개수, 소위원회별 심의 안건 및 위원 수 등을 알 수 없으며 과거 위원회에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가 구성된 사례가 없으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있는 정보 또한 부재함
- 이에 위원회의 심의·조정 대상에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08조의3에 따른 정보 제공을 포함하고, 회의를 9명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며, 분야별 소위원회의 구성 근거를 마련하는 데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할 수 없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제3호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 해당

7) 참고로, 수당 단가는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관련 지침에 따르면 위원회 참석비의 경우 1일당 15만원 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만원 내로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사전자료수집 및 회의안건 검토 등 별도의 용역제공에 대한 전문가 자문료 등은 별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

·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 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 내로 편성
· 원격지에서 위원회 참석시 소요되는 경비,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의 사전자료수집, 회의안건 검토 등 별도의 용역제공에 대한 전문가 자문료,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은 별도 편성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김효진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효진	02-6788-4654	hjkim1991@na.go.kr